

8. 양도신고

01 | 적용대상과 법적근거

신고 대상	「생화학무기법」제10조제2항에서 생물작용제등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폐기의무자에게 양도신고 의무를 부과 - 신고서 제출처 : 산업통상부 - 신고서 수리기관: 산업통상부장관
신고기한	(사전신고 의무) 양도 전에 미리 신고
유의사항	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(법 제10조제2항)

02 | 신고 의무 사항

누가?	- 생물작용제등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폐기의무자 ※ 신고제조자 : 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신고하여 수리된 자 ※ 폐기의무자 : 신고제조자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, 법을 위반하여 제조정지명령이나 제조시설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생물작용제 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
언제?	사전신고 의무: 생물작용제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
어디에?	산업통상부장관
어떻게?	「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2호서식]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작성 제출 → (온라인 접수)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(오프라인 접수)

8. 양도신고

03 | 신고 절차

단계	검토 사항	비 고
대상 여부 확인	• 법령상 양도신고의 폐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	• 법 제10조제1항
기한 산정	• 생물작용제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	• 법 제10조제2항
서류 준비	•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• 첨부서류(각1부) 1. 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양수 · 양도 계약서 사본	•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
제출(접수) 방법	• <u>온라인</u> –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	• 기관 계정 필요
	또는 • <u>오프라인</u> – 담당 부서로 우편·방문 접수	• 산업통상부
수리 후 의무	• 양도신고 확인증(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) 수령	•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
	• 양도: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	• 법 제10조제2항
	• <u>장부의 비치</u> : 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장부를 법정 기한 보존	• 법 제21조, 시행령 제12조

※ 법: 「생화학무기법」, 시행령: 「생화학무기법 시행령」, 시행규칙: 「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」

04 | 신고 방법(서식 작성 요령)

4.1 (온라인)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

1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<https://batims.or.kr/login>

2 “양도신고 신청하기” 클릭

8. 양도신고

3 신고서 작성

① 담당자 정보 – 자동 생성

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
biocompany년 | 공지사항 | 내 정보 관리 | 로그아웃

최근신고 수입허가관리 보유신고관리 제조신고관리 **폐기(양도)신고관리** 정기(수시)검사 자가점검

양도신고

신고서 작성 신고서 업로드 접수대기 검토중 신고 완료

• 담당자 정보

아이디	biocompany		
성명	김철수		
직위	과장		
휴대전화	010-1234-5678	전화	031-123-4567
이메일	000@0000.co.kr	팩스	
소속기관	바이오기업	소속부서	관리팀
조직구분	기업	담당자구분	관리책임자

② 신고인 정보 – 자동 생성

• 접수번호

접수번호		접수일		제출일자		처리기간	10일
------	--	-----	--	------	--	------	-----

• 신고인 정보

양도인	상호(명칭)	바이오기업
	성명(대표자)	홍길동
	생년월일 (사업자 등록번호)	123-45-67890
	주소	13488 Q 우편번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(삼평동) 1층 바이오기업
	전화번호	031-123-4567

③ 양수인 정보 – 해당 정보 기입

양수인 정보

양수인	상호(명칭)	생명공학기업
	성명(대표자)	김철수
	생년월일 (사업자 등록번호)	120-66-987654
	주소	14084 🔍 우편번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000 (안양동) 1층 생명공학기업
	전화번호	000 - 000 - 0000
	제조신고번호	제조신고-20XX-000

④ 양도 물질 – 해당 물질명을 선택

신고내용

양도 물질	물질명을 선택해 주세요. ▼
특성	
양도 수량	인체, 인수병원균 _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
양도 사유	_ 생물작용제 및 독소 목록물질 아님 (Not in the list)
첨부서류	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 (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(Sabia, Flexal, Guanarito, Junin, Machupo)) 니파 바이러스 (Nipah virus)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 (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) 두창 바이러스 (Variola virus) 라사열 바이러스 (Lassa fever virus) 리프트게곡열 바이러스 (Rift Valley fever virus) 마버그 바이러스 (Marburg virus)
신고일	2025.12.01
신고인	홍길동

8. 양도신고

⑤ 특성 - 다음 중 선택 입력 “인체·인수 병원균”, “동물병원균”, “식물병원균”
양도 수량, 양도 사유 - 해당 정보 기입

• 신고내용

양도 물질	보툴리눔균 (Clostridium botulinum)
특성	인체·인수 병원균
양도 수량	50 vial
양도 사유	생명공학기업과 분양 계약 체결 후 전량 양도함
첨부서류	1. 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생물작용제 제조신고 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.pdf 2. 양수·양도 계약서 사본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양수양도계약서.pdf
신고일	2025.12.01
신고인	홍길동

⑥ 첨부서류 - 첨부파일 업로드

• 신고내용

양도 물질	보툴리눔균 (Clostridium botulinum)
특성	인체·인수 병원균
양도 수량	50 vial
양도 사유	생명공학기업과 분양 계약 체결 후 전량 양도함
첨부서류	1. 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생물작용제 제조신고 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.pdf 2. 양수·양도 계약서 사본 1부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양수양도계약서.pdf
신고일	2025.12.01
신고인	홍길동

※ 첨부서류의 상세내용은 “4.3 첨부서류”에서 확인하고 작성

7 (필요시) 추가 입력 사항

• 추가 입력 사항

메모

기타 첨부자료

파일 선택

선택된 파일 없음

8 신고서 생성 클릭

신고서 생성

취소

4 신고서 업로드

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

biocompany님 | 공지사항 | 내 정보 관리 | 로그아웃

최근신고

수입허가관리

보유신고관리

제조신고관리

폐기(양도)신고관리

정기(수시)검사

자가점검

양도신고 - 바이오기업 바이오기업

신고서 작성

신고서 업로드

접수대기

검토중

신고 완료

• 직인 날인한 양도신고서 업로드

Step 01

양도신고서 파일 다운로드

①

양도 신고서 파일 다운로드

다운로드 후 직인 날인하여 업로드해 주세요.

Step 02

직인 날인 양도신고서 업로드

②

파일 선택

선택된 파일 없음

양도신고서.pdf

③

접수요청

양도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직인 날인 후 이미지 파일 또는 pdf파일로 업로드 해 주세요.

① 신고서 생성 후 파일을 다운로드 후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스캔

②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

③ 접수요청 클릭

※ 수정이 필요한 한 경우에는 “신고서 업로드”의 하단에 수정 클릭

8. 양도신고

4.2 (오프라인) 산업통상부 방문접수

-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에 방문접수

■ 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

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양도인	상호(명칭) 바이오기업	
	성명(대표자) 홍길동	사업자등록번호 123-45-678901
	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(삼평동) 1층 바이오기업	전화번호 000 - 000 - 0000

양수인	상호(명칭) 생명공학기업	
	성명(대표자) 김철수	사업자등록번호 120-66-987654
	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000 (안양동) 1층 생명공학기업	전화번호 000 - 000 - 0000

양도 물질 **보툴리눔균**

양도 수량 **50 vials**

양도 사유

생명공학기업과 분양 계약 체결 후 전량 양도함

「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양도를 신고합니다.

0000 년 00 월 00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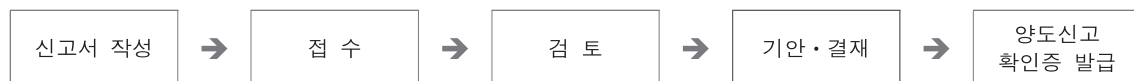
신고인

홍길동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양수·양도 계약서 사본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산업통상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

4.3 첨부서류

※ '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' 서식의 첨부서류	
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• 양수인의 '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' 사본 1부 또는 '생물작용제등 제조(변경)신고 확인증' 사본 1부 • 양수인의 '사업자등록증' 사본 1부
양수·양도 계약서	• 계약 당사자 정보 ▶ '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'의 '양도인'과 '양수인' 정보와 동일 ▶ '양수인'이 신고제조자(동일 생물작용제등을 제조신고한 다른 기업, 기관 등)임을 확인 ☞ 제조신고번호, 제조신고 물질 명칭 정보 • 계약 목적 ▶ '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'의 '양도 사유'와 동일 내용 • 양수·양도 대상 생물작용제 등의 정보 ▶ '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'의 '양도 물질', '양도 수량'과 동일 (※ '양도 수량' 단위 기재) ▶ 제조번호, 제조일자 등 • 양도·양수 조건 ▶ 양도 방법(직접 양도, 전문 운반업체 등) ▶ 양도 장소 및 일시 ▶ 포장·운반 보안요건(사고 발생 대응 방안) • '양수인'의 「생화학무기법」 준수 및 책임 • 계약 기간 및 효력

8. 양도신고

4.4 제출전 (자가) 점검표

● 기본 정보·적용 대상 확인

☐	• 이번 건이 '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'에 해당함을 확인했다.
☐	• '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'을 확인했다. → 신고제조자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폐지의 신고한 날 → 법을 위반하여 제조정지명령이나 제조시설폐쇄명령을 받은 날
☐	• 생물작용제등 양도'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다.
☐	• 양수인이 신고제조자(동일 생물작용제등을 제조신고한 다른 기업, 기관 등)임을 확인하였다.
☐	•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유 중인 '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' 및 '양도신고 후 양도'를 진행할 일정을 잡았다.

● 서식 작성 사항(필수 기재)

☐	• 양도인과 양수인의 기본정보(상호/대표자 성명/사업자등록번호/주소/전화번호)를 정확히 기재했다.
☐	• '양도 물질'을 명확히 기재했다.
☐	• '양도 수량'에 단위를 빈칸에 명확히 적었는가? (예: mg, mL, vial 등)
☐	• '양도 사유'를 명확히 기재했다.
☐	• 서명/직인, 제출일자, 연도 누락이 없는가?

● 첨부서류 준비

☐	• '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'를 첨부했다.
☐	• '양수 · 양도 계약서 사본'을 첨부했다.
☐	• 제출 형식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, 인적사항(성명·번호·주소)의 일치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.

4.5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	양도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?
A	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생물작용제등을 다른 신고제조사에게 양도하려는 경우, 양도 전 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Q2	생물작용제등을 판매 (예: 생물작용제등 제조업체·수입업체 등)하거나 양도 (예: 연구소, 시도 보건환경연구원, 동물위생시험소 등)하는 경우에도 사전 양도신고 를 해야 하나요?
A	아니요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폐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 양도신고를 하지 않습니다. (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폐기의무자가 생물작용제등을 다른 신고제조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외)
Q3	양도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?
A	• 양도인: 신고제조사(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) • 양수인: 양수받는 물질과 동일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제조사이어야 하며,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※ 양수인이 신고제조자가 아닌 경우 양도는 불가합니다.
Q4	양수인이 제출해야 하는 “신고제조사 증명서류”는 어떤 형식인가요?
A	‘생물작용제등 제조(변경)신고 확인증’ 사본 1부
Q5	양도 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?
A	양도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취소 가능하며, 산업통상부 담당부서에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.
Q6	양도하려는 물질의 수량 제한이 있나요?
A	법령상 명시된 일률적인 수량 제한은 없습니다.
Q7	양도신고를 통해 외국에 있는 기관에 양도할 수 있나요?
A	아닙니다. 생물작용제·독소는 국내 신고제조사에게만 양도 할 수 있습니다.
Q8	양도 후 별도의 사후보고가 필요한가요?
A	네. ‘양도신고’ 이후 생물작용제등을 양도가 종료되어도, 법 제21조,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관련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. →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 전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 →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 후 처분사항(양도) 포함

8. 양도신고

Q9	양도인은 '양도신고' 이후에도 법 제21조의 장부를 보존 해야 하나요?
A	네. '양도신고' 이후 생물작용제등을 양도가 종료되어도, 법 제21조,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관련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. →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 전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 →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 후 처분사항(양도) 포함

05 | 유의사항(법 위반 시 제재)

「생화학무기법」 제10조제2항 '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'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될 처벌 규정

5.1. 위반 사례

● 사전 양도신고 위반(법 제10조)

미신고	
사례	• 연구 종료 후 남은 생물작용제등을 사전 신고하지 않고 양도
	• 비신고제조자에게 생물작용제등을 양도
근거	법 제10조제2항은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고,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하도록 함

● 생물작용제등 처분 위반(법 제10조)

보유물질 양도 기한 준수 미이행	
사례	• 폐기의무자가 양도신고를 하고,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 양도하지 않음
근거	법 제10조제2항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양도신고한 경우,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하도록 함

● 장부의 비치 위반(법 제21조)

장부의 비치 등 위반	
사례	• ‘양도신고’ 후 생물작용제등의 관련 장부를 폐기
근거	법 제21조에 따라 5년간 관련 장부를 기록·유지 →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 전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 →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 후 처분사항(양도) 포함

5.2 벌칙 및 행정처분 규정

장부의 비치 의무 위반 경우	
행위	양도신고 후 법 제21조에 따른 장부 비치를 불이행
조항	법 제21조제1항, 제2항
벌칙	• 법 제28조제7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양벌규정(법인 등)에 대한 책임	
조항	법 제29조
벌칙	• 사업(기관) 명의로 위반이 발생한 경우, 행위자(임직원)와 별도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 벌금형 등 처벌될 수 있음. ※ 다만 상당한 주의·감독을 다한 경우는 예외

8. 양도신고

06 |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 (자가) 점검표

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(“폐기의무자”)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.

☐	• 생물작용제등 양도 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.
☐	•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하였다. ☞ 동일 생물작용제등을 제조신고한 다른 기업, 기관 등에 양도
☐	• (기록 보존) 관련 장부 및 자료를 5년간 보존한다. ☞ ‘양도신고’ 후 처분사항(양도) 포함

07 | 「생화학무기법」 법령

「생화학무기법」

[법률 제21065호]

제9조(제조 폐지신고)

-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제10조(폐기)

-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폐기 대상은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로 한정한다.
 1. 제8조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거나 제8조의2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
 2.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
 3.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경우

- ②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(이하 “폐기의무자”라 한다)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허가제조사에게 양도할 수 있고,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.
- ③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,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질병관리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1조(장부의 비치 등)

- ① 허가제조사, 신고제조자와 제13조·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비치의무자”라 한다)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 1.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·가공량·소비량 및 수출입량
 2.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
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제27조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
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
3.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
4.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
8. 양도신고

제28조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2.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3.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
4. 제11조제2항이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5.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6.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7.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·기록·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

제29조(양벌규정)

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(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) 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생화학무기법 시행령」

[대통령령 제35803호]

제12조(장부의 비치 등)

-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1.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·가공량·소비량 및 보유량
 2.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
 3.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
 4.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·인수량 및 인도자·인수자명
 5.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·국가별 수출입량
 6.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
-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1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
 2.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

제12조의2(자료 제출)

-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「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」

[산업통상부령 제1호]

제5조의2(양도신고)

-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2. 양수·양도 계약서 사본
-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